

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(권재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17-114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	2017. 10. 23.
발 의 자	권재경, 이흥희, 변상원, 최광열, 김향란, 표주숙, 강철우, 박희순, 이성복, 의원 (9인)

1. 제안이유

-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세무사 위·해촉 및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위·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마을세무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3조)
- 다.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4조)
- 라.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, 제6조)
- 마. 포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7조, 제8조)
- 바.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22조
「거창군 포상 조례」 제2조, 제5조
- 나. 예산조치: 2018년 예산반영 검토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, 재무과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2017. 10. 26. ~ 10. 30.
 - (나) 예고결과: 없음
 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 - (6) 도내 제정현황(4): 거제시, 양산시, 의령군, 함안군

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·해촉 및 임기) ① 군수는 「세무사법」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창군 마을세무사(이하 “마을세무사”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.

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.

1.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
2. 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
3.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
4.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

제3조(마을세무사의 역할)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.

제4조(이용대상)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, 취약계층,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상담방법)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·팩스·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.

②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,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 하여 “찾아가는 마을세무사” 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.

제6조(상담실적 관리)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 공무원을 「거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개인정보 수집 등)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,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 ·팩스·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위 촉 장

제 - 호

위 촉 장

세무사 ○ ○ ○

귀하를 「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
조례」 제2조에 따라 거창군 마을세무사로
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 : . . ~ . .)

년 월 일

거창군수 ○ ○ ○

직인

[별지 제2호서식]

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

[illegible]

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행정안전부(지방세정책과)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 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성명, 사무실 전화번호, 휴대전화 번호, 전자우편, 팩스번호	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	2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예, 아니오)
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 기관	제공목적	제공하는 항목	보유기간
전국 자치단체(243개),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	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	성명, 사무실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, 팩스번호	2년
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(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)	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		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예, 아니오)

<기타 고지 사항>

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, 웹사이트,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담당지역 경상남도 거창군

성 명 (서명 또는 인)

거창군수 귀중

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

접 수 번 호		세 무 상 담 기 록 카 드				접 수 일	
No.						. . .	
상 담 종 류 (V표시)	◦ 국 세 상담 () ◦ 지방세 상담 () ◦ 지방세 불복 ()	상 담 방 법 (V표시)	◦ 방문 상담 () ◦ 팩스 상담 () ◦ 전화 상담 () ◦ 메일 상담 ()				
신 청 인	면 동 명						
	성 명						
	연 락 처						
상담 내용							
상담 의견							
※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							
거창군 마을세무사 (인)							

관련법령

□ 「 지방자치법 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가. (생략)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2. ~ 6. (생략)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 거창군 포상 조례 」

제2조 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군민("외국인을 포함한다." 이하 같다) 및 단체에 행한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

제5조 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

1.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2.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
3.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양양에 숭선수범한 경우